

대 법 원

제 2 부

판 결

사 건 2013후2446 권리범위확인(상)  
원고,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소리빙  
소송대리인 변리사 윤의섭 외 1인  
피고, 상고인 피고  
소송대리인 변리사 권혁철  
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13. 9. 5. 선고 2012허11375 판결  
판 결 선 고 2013. 12. 12.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(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)를 판단한다.

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서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

표장이 둘 이상의 문자·도형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표장인 경우, 그 전체뿐만 아니라 그 중 분리인식될 수 있는 일부만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거기에 상표권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, 이처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부분이 확인대상표장에 포함되어 있다면 확인대상표장 중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등록상표와 사이에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·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. 그리고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'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'라고 함은 특정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을 말하는 것으로서(대법원 2003. 12. 26. 선고 2003후243 판결 등 참조),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심결시라고 보아야 한다(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9후24 판결 등 참조).

원심은, ① '매직블럭'이 장기간 동안 다수의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'청소용(세척용) 스펀지'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어 왔고, ② 피고도 '매직블럭'을 품목 명칭으로 하여 품질보증지정서를 교부받았으며, ③ 일반 수요자들이 '청소용(세척용) 스펀지'를 '매직블럭'이라고 지칭한 다수의 인터넷 게시물이 존재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, 확인대상표장 '매직블럭 매직폼' 중 '매직블럭' 부분은 이 사건 심결 당시 그 사용상품인 '세척용 스펀지'에 관하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관용표장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, 이 부분에는 '기름때를 제거하는 연마스펀지[멜라민 레진 폼

(Melamin Resin Foam)으로 만들어진 것]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'메직블럭'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(등록번호 생략)에 관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,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.

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,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용표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         대법관            신영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법관            이상훈

주    심            대법관            김용덕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법관            김소영